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 운영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「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관부서의 장”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이란 공론화 및 갈등관리 안건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2. “주관부서의 장”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이란 공론화 및 갈등관리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.

제2장 공론화

제3조(공론화 심의대상) 공론화·갈등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공론화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.

1.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을 통해 30일간 6,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사항
2.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민의 청원을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
3.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4조(심의제외)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론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무범위가 아닌 경우
2. 공무원의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

제5조(공론화추진위원회의 기능)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공론화 진행 방식의 결정·추진에 관한 사항
2. 공론화 관련 시민 대상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공론화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4. 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

5. 공론화 결과의 종합·정리에 관한 사항

제6조(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②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 단, 공론절차에 따라 각 분야의 구성은 변경할 수 있다.

1. 법률분야 : 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법률 자문
2. 조사분야 : 공론조사를 위한 설문과 통계분석에 관한 자문
3. 숙의분야 : 공공토론 개최에 관련한 온·오프라인 숙의 관련 자문
4. 기타 공론화 추진 의제와 관련된 분야

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시장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위해 소관부서와 주관부서를 포함한 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
제3장 갈등 관리

제7조(갈등진단) 소관부서는 정책과 사업에 수반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갈등진단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주요정책사업
2. (전략)환경·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
3. 재산권,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자치법규(조례, 규칙)의 제·개정을 수반하는 사업
4. 기타 사회적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사업

제8조(갈등관리추진위원회 기능) ①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조례16조의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의제별 숙의시민단 구성
2. 의제별 숙의시민단 운영 절차
3. 의제별 숙의시민단 숙의 결과 공개 여부

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다음 각 호 갈등관리

절차를 자문한다.

1. 갈등대응계획
2. 갈등영향분석
3. 의제별 숙의시민단 실시 여부
4. 기타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한 사항

제9조(갈등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추천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1. 소통분야 : 시민참여와 갈등관리 절차 관련
2. 법률분야 : 갈등관리 절차상 법률 자문 관련
3. 사업분야 : 갈등관리추진위원회 분과별 의제 관련
4. 위원회가 해당 연도 갈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

③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분과 형태로 운영하고, 각 분과는 해당 연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④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자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⑤ 시장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의제별 숙의시민단 추진에 대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위해 소관부서와 주관부서를 포함한 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숙의시민단의 기능) 숙의시민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한 숙의 진행 후 합의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
2. 갈등의 영향범위가 2개 이상의 군·구인 사안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의 사무범위인 경우
3. 기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

제11조(숙의시민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숙의시민단 구성을 위해 지역, 성별, 연령 등의 비례를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시민을 선발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숙의시민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임기 중 인천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,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는 숙의시민단에서 해촉한다.

③ 제2항에 의해 해촉된 인원이 전체의 1/4을 초과할 경우 위원회는 숙의시민단의 충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단, 1/4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시점이 임기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충원하지 아니한다.

④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구성된 숙의시민단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의제별 숙의시민단을 구성한다.

⑤ 의제별 숙의시민단은 3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, 위원회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. 단, 국가적인 재난 상황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장 횟수의 제한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(숙의시민단 숙의 절차 진행)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숙의절차는 주제발표와 질의응답, 분임토의 등의 숙의과정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숙의시민단의 권고안은 찬반 결정보다 정책·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우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) ① 갈등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관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. 단, 관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전문적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. 단 필요시 위원 합의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회의 합의로 정한다.

1. 협의회의 목적, 구성, 전문적 조정인 선정
2. 당사자의 범위, 운영일정, 진행방식
3. 협의 절차 및 의결, 결과문의 작성
4.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
5. 기타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장 보칙

제14조(수당 등) 시민 참여자와 각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사실조사) ① 각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사전에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서면심의)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,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항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7조(제척·기피·회피) 각 위원회 위원, 의제별 숙의시민단 등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.